

## 보 도 자 료

## 计引 医蜂桃 对故则于

보도 일시	2022. 12. 20.(화) 10:00	배포 일시	2022. 12. 20.(화) 08:00
담당 부서	금융정책국	책임자	과 장 변제호(02-2100-2830)
<총괄>	금융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수빈(02-2100-2833)

## 자본시장연구원 주최, 「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」세미나 개최

- □ '22.12.20일(화),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"**바람직한 내부 통제제도 개선방향**"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.
  - 일시 / 장소 : '22.12.20. (화) 10:00~11:30 /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
  - (주최) 자본시장연구원 / (후원) 금융위원회

Ť	<b>소</b> 서	발제자	발제내용	
71	회식	<b>신진영</b> 자본시장연구원장	개회사	
<b>'</b> I	1717	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	축 사	
		<ul><li>●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</li><li>⇒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</li></ul>		
ţ	발 제	<ul><li>②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</li><li>⇒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</li></ul>		
		<ul><li>❸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</li><li>⇒ SC은행의 개별책임제도</li></ul>		
<u>_</u>	 E 론	● 김유니스 교수 (前이화여대 법전원)		
	<b>~</b> ※ <b>좌장 :</b> <b>심영 교수</b> <sup>면세대 법전원)</sup>	<b>② 안수현 교수</b> (한국외대 법전원)		
		❸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		
		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		

- □ 금일 세미나에는 **정부와 연구원,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**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,
  - 특히 금융위·금감원에서 운영하는 「내부통제 제도개선 TF」 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·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.

- □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, 「내부통제 제도개선 TF」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.
  -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, "**①**누가(직무권한), **②무엇을**(책임 영역) **③어떻게**(통제활동)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"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.

## ※ 내부통제 규율 개선방안

- 가.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
- 나.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
- 다.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+ 필요시 면책
- 라.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
- □ 두 번째 발제자인 **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**은 미국, 영국,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하여,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.
  - 미국과 영국과 같이 **감독자책임\*을 명확화**하는 대신, 내부통제체계의 구축·운용·관리 등 **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**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.
    - \* 11.30일 발표한 「내부통제 TF 중간 논의결과」의 "관리책임"과 동일한 의미
- □ 마지막으로, SC제일은행의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"개인책임제도 (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)"와,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"책임지도(responsibilities map)"를 중점 소개하였습니다.
  - 특히,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(duty of responsibilities)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되며,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.
- □ 토론자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**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**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

- 김유니스 교수(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)는 "금번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"라고 평가하며, "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,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"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.
- **안수현 교수**(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)는 "금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**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**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의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"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- 한편,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와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,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"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.
- □ 좌장을 맡은 심영 교수(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)는 "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며",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.
- □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,
  - **내년 1/4분기**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「지배구조법」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.

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<총괄>		담당자	사무관	김수빈 (02-2100-2833)
<공동>	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·기획실	책임자	실 장	박창균 (02-3771-0834)
		담당자	차 장	김혜성 (02-3771-0613)